

「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」 일부개정안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613호

1. 개정 이유

- 자기부상열차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자기부상열차의 설비와 차량에 대해서는 「철도의 건설 및 궤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궤도시설의 기술기준」 제3장 도시철도 규정(제117조부터 제196조)과 「궤도차량 기술기준」 도시궤도차량(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) 규정(제3장부터 제4장)을 준용하는 것으로 신설(안 제79조의2)
- 나. 「궤도안전법」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시설로 같은 법에 따른 검사결과 및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결과가 적정한 경우 자기부상열차의 설비와 차량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신설(안 제79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

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(신설)한다.

제79조의2(설비 및 차량) ① 자기부상열차의 설비 및 차량에 대해서는 「철도의 건설 및 궤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궤도시설의 기술기준」의 제3장 도시철도 규정 제117조부터 제196조 및 「궤도안전법」에 따른 「궤도차량 기술기준」의 도시궤도차량(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) 규정 제3장부터 제4장까지를 준용한다.

② 「궤도안전법」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시설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결과가 적정한 경우(궤도사업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.) 제1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장 자기부상열차</p> <p>제78조(차량 연결의 제한) 차량은 3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79조 (운전속도) 자기부상열차는 그 운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7장 자기부상열차</p> <p>제78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9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9조의2(설비 및 차량) ① 자기부상열차의 설비 및 차량에 대해서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철도시설의 기술기준」의 제3장 도시철도 규정 제117조부터 제196조 및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른 「철도차량 기술기준」의 도시철도차량(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) 규정 제3장부터 제4장까지를 준용한다.</p> <p>② 「철도안전법」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시설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결과가 적정한 경우(궤도사업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.) 제1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</p>